

청소년 보호법상의 금지행위 및 처벌사항

2016. 12월 말 기준

| 구 분 | 대 상 | 금지(의무)사항 | 형 사 처 별 | 과 징 금 |
|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청소년 유 해 매체물 | ◦음반·비디오물·게임물 | 유해표시의무(법 제14조) |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| 시정명령대상 (표시명령, 표시방법 변경명령) |
| | | 표사·포장 훼손 금지(법 제15조) | 500만원이하 벌금 | |
| | | 청소년대상 판매대여·배포, 시청·관람·이용제공 금지 (법 제16조1항) |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|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제조업자1,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|
| | | 유해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사·진열금지 (법 제16조2항) | | 시정명령대상 (전사·진열 금지명령) |
| | | 구분·격리의무(법 제17조) | | 시정명령대상 (구분·격리 금지명령) |
| | | 자동기계장치,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목적 전사·진열금지 (법 제17조2항) ※설치자가 청소년 구입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경우, 청소년출입·고용 금지업소내 설치 가능 | | 시정명령대상 (전사·진열 금지명령) |
| | ◦영화·연극 음악무용 등 오락적관람물 | 유해표시의무(법 제13조) |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| 시정명령대상 (표시명령, 표시방법 변경명령) |
| | | 표사·포장 훼손 금지(법 제15조) | 500만원이하 벌금 | |
| | | 청소년대상 시청·관람·이용제공 금지 (법 제16조1항) |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|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제조업자1,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|
| | ◦전기통신을 통한 부호· 문언·음향 또는 영상정보 | 유해표시의무(법 제13조) |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| 시정명령대상 (표시명령, 표시방법 변경명령) |
| | | 표사·포장 훼손 금지(법 제15조) | 500만원이하 벌금 | |
| | | 청소년대상 시청·관람·이용제공 금지 (법 제16조1항) |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|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제조업자1,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|
| | ◦방송프로그램 “보도방송프로그램 제외” | 유해표시의무(법 제13조) |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| 시정명령대상 (표시명령, 표시방법 변경명령) |
| | | 표사·포장 훼손 금지(법 제15조) | 500만원이하 벌금 | |
| | | 방송시간제한(법 제18조) |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| |
| | ◦간행물 -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, 특수주간신문, 잡지, 생활정보지 - 만화·사진첩 화보·류소설 등의 도서류, 전자출판물 - 외국에서 제작 수입된 간행물 | 유해표시의무(법 제13조) |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| 시정명령대상 (표시명령, 표시방법 변경명령) |
| | | 포장의무(법 제14조) (대여후 반환받는 것 제외) |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| 시정명령대상 (표시명령, 표시방법 변경명령) |
| | | 유해표사·포장·훼손 금지 (법 제15조) | 500만원이하의 벌금 | |
| | | 청소년대상 판매대여·배포 등 금지 (법 제16조1항) |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|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제조업자1,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|
| | | 유해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사·진열금지(법 제16조2항) | | 시정명령대상 (전사·진열 금지명령) |
| | |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사· 진열금지(법 제16조3항) | | 시정명령대상 (전사·진열 금지명령) |
| 구분·격리의무(법 제17조1항) | | | 시정명령대상 (구분·격리 금지명령) | |
| 자동기계장치, 무인판매 기에 의하여 유통목적으로 전사·진 열금지(법 제17조2항) | | | 시정명령대상 (전사·진열 금지명령) | |

| 구분 | 대상 | 금지(의무)사항 | 형사처벌 | 과징금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청소년 유해 매체물 | ◦광고선전물 | 청소년대상 배포금지(법 제16조제1항) |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|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제조업자1,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|
| | | 설치부착배포금지 (법 제19조제1항) |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| 시정명령대상 (설치광고, 부착광고, 배 포광고 선전물 철거명령) |
| | ◦외국매체물 | 유통·소지금지 |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|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,000만원 |
| 청소년 유해 업소 | ◦유흥주점 (룸싸롱, 나이트클럽 등) ◦단란주점 ◦무도학원, 무도장 ◦사행행위 영업 (카지노, 뽀징고 등) ◦비디오감상실업, 복합영상 물제공업, 제한관람가비 디오물소극장업 ◦노래연습장업 (청소년실제외) ◦일반게임장업, 복합유통계 임제공업 ◦여성가족부 고시업소(성기 구 취급업소, 키스방, 멀티방 등 신변종업소) | 청소년출입금지(법 제29조제2항) |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| 출입허용횟수 마다 과징금 300만원 |
| | | 청소년고용금지(법 제29조제1항) |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| 1명 1회 고용마다 과징금 1,000만원 |
| | | 청소년출입·고용금지표시 (법 제24조제5항) |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| |
| | ◦숙박업(휴양콘도미니엄 제외) ◦이용업 (타 법령에서 허용된 남자 청소년 예외) ◦개실, 안마실이 있는 목욕장업 ◦제조담배소매업 ◦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◦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,호 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 ◦만화대여업 ◦다방(티켓다방) 등 ◦비디오물소극장업 ◦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◦여성가족부 고시업소 | 청소년 고용금지 (법 제24조제1항) |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| 1명 1회 고용마다 과징금 500만원 |
| | | | | |
| | 청소년 유해 약물 등 | ◦주류,담배 | 청소년대상판매대여 배포금지(법 제28조제1항) |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|
| 청소년대상판매대여 배포금지(법 제28조제1항) | | |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|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|
| ◦환각물질(학습용, 공업용 제외), 마약류 ◦전자담배 ◦성기구류, 레이저포인터, 칼리프선(위원회 고시) | | 유해표시의무 (법 제28조제5항) |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| 시정명령 후 100만원 |
| | | 유해약물 대리구매·제공 (법 제28조제2항) |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| |

| 구 분 | 대 상 | 금지(의무)사항 | 형 사 처 별 | 과 징 금 |
|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청소년 유 해 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유흥주점, 단란주점, 노래방 등 ◦안마시술소, 퇴폐 이발소 등 퇴폐업소 ◦여관, 모텔, 호텔 등 숙박업소 ◦보도방, 무허가 직업 소개소 등 장소불문 | <p>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-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 (법 제30조의 제1호) |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유흥주점, 단란주점, 노래방 등 장소불문 | <p>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-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-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 (법 제30조의제2호) | 10년이하의 징역 | |
| | | <p>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하게 하는 행위 (법 제30조의제3호)</p> | 10년이하의 징역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장소불문 | <p>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(법 제30조의제4호)</p> | 5년이하의 징역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장소불문 | <p>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,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(법 제30조의제5호)</p> | 5년이하의 징역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장소불문 | <p>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(법 제30조의제6호)</p> | 5년이하의 징역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유흥주점, 단란주점, 노래방, 비디오방 등 장소불문 | <p>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(법 제30조의제7호)</p> |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|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300만원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여관, 모텔 등 숙박 업소, 노래방, 비디오방 등 장소불문 | <p>청소년에 대하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-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 하는 행위(법 제30조의제8호) |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|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300만원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티켓다방 | | <p>주로 다류를 조리·판매하는 업소에서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게 하거 나, 이를 조장·묵인하는 행위 (법 제30조의제9호)</p> |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|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,000만원 |
| 공 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 든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 부 확인시 | <p>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(법 제43조)</p> | 300만원이하 벌금 | |

※ 과징금 :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